

검 토 의 건 서

[자문의뢰 내용]

질의내용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7501 회장 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에 관한
1심판결에 따른 대한요트협회 회장 당선자 지위

[질의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1. 관련규정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19조(회장 선출기구)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제19조의3(당선인 결정)

①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⑦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회장, 부회장은 구비서류를 갖

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⑨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취임 후에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연임 횟수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대한요트협회 정관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⑧ 협회의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가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연임 횟수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대한요트협회(이하 '협회') 회장 당선자 유준상(이하 '당선자')에 대한 위 판결의 주문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는 위 당선자를 회장으로 인준하는 의사표시를 하라"는 것과 "협회는 당선자가 협회 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가. 체육회의 항소에 따른 당선자의 지위

당선자는 2018. 5. 17. 실시된 협회 회장 보궐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되었고, 협회는 2018. 5. 18. 체육회에 당선자에 대한 인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선자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연임이 제한되는 자에 해당됨에도 동조 제2항의 연임 제한의 예외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 2018. 6. 12. 체육회는 인준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당선자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위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체육회와 판단을 달리 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하였습니다.

체육회는 연임제한 조항의 취지와 의미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에 이의가 있어 2018. 12. 26. 항소를 제기하여 체육회에 대한 위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협회는 항소하지 않았다면 항소기간 도과로 협회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장 당선자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2조 제7항에 따라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체육회는 인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항소하여 위 소송이 계류중이므로 당선자는 회장으로서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체육회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협회 회장 직무대행이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협회는 당선자에 대하여 회장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회장 선거를 진행하는 등 회장의 궐위를 전제로 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나. 기존 가처분결정(2018카합10297)과의 관계

당선자는 체육회를 상대로 인준불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8. 9. 14. 위 2018가합107501판결 선고시까지 체육회의 인준거부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위 판결의 선고로 2018. 12. 15.부터 체육회의 인준거부의 효력은 다시 발생하였고, 체육회의 항소로 인준거부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 가처분 결정의 이유에서도 「협회 회장은 선출되면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2조 제7항),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취임할 수 있으며, 체육회는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등 기타사유로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할 수 있는 점(협회 정관 제22조 제8항), 체육회는 상급단체의 지위에서 체육회의 정관 등 관련 규정에 기해 회원종목단체 회장에 대한 인준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육회의 인준행위는 협회 회장 선출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법률요건에 해당한다. 체육회가 당선자에 대하여 협회 회장 인준을 거부하는 경우 당선자는 협회 회장으로 취임할 수 없고, 그 회장 선출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 결정이유에서 「체육회가 당선자의 인준을 거부하고 있어 당선자의 회장 취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점, 체육회의 인준거부 및 회장 선임행위의 효력없음」이라고 언급함과 아울러 위 2018가합107501판결에서도 체육회에 대하여 인준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별도의 결정을 함으로써 체육회의 당선자에 대한 인준이 없는 경우에는 회장으로 적법하게 취임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위 가처분 결정과 판결에서는 각각 위 판결선고시와 체육회에 대한 판결확정시까지 체육회의 인준거부와 그로 인하여 회장 선임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이유로 협회가 새로운 회장 선거 등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위와 같은 결정과 판결을 내린

것이므로, 협회가 위 판결선고에 항소하였다면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2018. 12. 15.부터는 인준거부의 효력이 발생하고 회장 선출행위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새로운 회장 선거를 할 수 있으나, 항소하지 않는다면 체육회에 대한 판결확정시까지 회장의 공석으로 인한 새로운 회장 선거 등의 조치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결론

체육회의 항소에 따른 위 판결의 확정시까지 체육회의 별도 인준 의사표시가 없다면 당선자는 회장에 취임할 수 없고, 협회는 항소하지 않은 경우 위 판결 확정시까지 새로운 회장선거를 할 수 없으며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과 협회 정관에 따른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끝.

※ 본 회신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향후 규정의 개정 또는 판결의 확정에 따라 이후 상황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